



## 제3차 코칭심리사 서류심사 공고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코칭심리학회는 본 학회가 정한 코칭심리사 자격 규정 및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제3차 코칭심리사 서류심사를 실시합니다. 본 학회의 코칭심리사 수련과정에 등록된 후 필기 시험에 합격한 회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응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3일

한국심리학회장      김 재 휘  
한국코칭심리학회장      이 희 경

## < 2018년도 제3차 코칭심리사 서류심사 응시 안내>

### 1. 일시 및 접수방법

<b>① 응시접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18년 1월 2일(화) 10시 ~ 1월 15일(월) 17시까지</li> <li>- 방법: 코칭심리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코칭심리사 메뉴에서 1급/2급 선택 → 자격취득 프로세스에서 서류전형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심사비 결제(카드 및 계좌이체)</li> <li>- 심사비 : 1급 8만원 / 2급 4만원</li> </ul>
<b>② 서류접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18년 1월 2일(화) ~ 1월 15일(월)까지</li> <li>- 방법: <b>등기우편접수 (15일 소인까지 유효)</b></li> <li>- 제출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 501호(서초동, 정주빌딩) 한국코칭심리학회 사무국 (봉투에 '코칭심리사 서류심사 제출용' 기재요망)</li> </ul>
<b>③ 합격자발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18년 2월 12일 (예정)</li> <li>- 방법: 코칭심리학회 홈페이지 및 합격자에게 개별 공지 (합격자에 대한 면접은 2월말 실시될 예정입니다.)</li> </ul>

※ 접수기한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2. 구비서류

-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수련수첩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경력증명서는 코칭 경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기수, 사례수, 기간 등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급사항에 대해 학회에서 확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아래에 기술된 필수서류 이외에도 자격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추가적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공고문 이외 코칭심리사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한 서류는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불합격자의 경우 수련수첩은 결과발표 후 반환합니다.

## 1) 코칭심리사 1급

(1) 코칭심리사 서류심사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출력

(2) 연회비 납부증명서 : 최초 수련활동일로부터 2018년까지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수련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명서는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회비관련 → 회비납부내역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2014년이전의 납부증명서는 모학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또한 미납연도 회비(모학회+분과학회)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모학회 사무국을 통해 납부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필수과목 이수 증명 (※ 2015년 필기시험 최종합격자에 한함)

①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 과목 이수자 : 성적증명서 원본

: 과목이름이 다소 상이할 경우 해당과목의 강의계획서(syllabus)를 제출하면 자격제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② ‘학회 인정교육(40시간 이상)’ 이수자 : 교육이수 증명서 원본

: 교육연수 수련 조건 ‘최근 3년 이내 총 48시간’과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자격규정 제4조에 따른 응시자격 증명 :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증명서 제출

① 심리학 및 유관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심리학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 박사학위증명서

■ 심리학 유관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 박사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이수과목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박사 과정에서 심리학과목을 7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유관전공으로 인정합니다. 박사 과정의 성적증명서에 나타난 심리학 과목을 표시하여 제출하십시오.)

■ (공통) 코칭실무 경력 증명 : 기관장 직인이 찍힌 2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

② 심리학 및 심리학 유관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3년 이상 코칭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심리학전공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최종학위증명서

■ 심리학 유관전공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최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이수과목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석사학위소지자는 석사과정에서 심리학과목을 7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박사학위소지자는 박사과정에서 심리학과목을 7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유관전공으로 인정합니다. 성적증명서에 나타난 심리학 과목을 표시하여 제출하십시오.)

■ (공통) 코칭실무 경력 증명 : 기관장 직인이 찍힌 3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

③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격증 사본

■ 코칭실무 경력 증명 : 기관장 직인이 찍힌 2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

④ 코칭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격증 사본
- 코칭실무 경력 증명 : 기관장 직인이 찍힌 2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

(5)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수련내역 증명

① 수련수첩

: 수련수첩에는 다음의 수련내용을 기재하고 수퍼바이저가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코칭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30회기 이상(총 30사례 이상)의 실시
- 수퍼비전 : 20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기록
- 사례연구모임 참가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례연구모임에 10회 이상 참가한 기록
- 심리평가 : 20회 이상의 심리평가 실시 기록 (심리평가 도구의 범위는 본 자격제 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로 제한되며 동일한 검사도구의 사용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교육연수 : 서류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총 48시간 이상의 코칭심리 학술활동(학술대회, 교육 등) 참가기록  
※ 수련기간이 3년이하일 경우에도 총 48시간 이상의 교육연수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2사례의 사례보고서(5회기 이상 및 1년 이내 사례)와 1회기의 코칭 세션 녹화물 (음성 또는 영상)을 담은 USB 또는 CD

2) 코칭심리사 2급

(1) 코칭심리사 서류심사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출력

(2) 연회비 납부증명서 : 최초 수련활동일로부터 2018년까지

-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수련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증명서는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회비관련 → 회비납부내역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2014년이전의 납부증명서는 모학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 또한 미납연도 회비(모학회+분과학회)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모학회 사무국을 통해 납부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필수과목 이수 증명 (※ 2015년 필기시험 최종합격자에 한함)

- ①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과목 이수자 : 성적증명서 원본  
: 과목이름이 다소 상이할 경우 해당과목의 강의계획서(syllabus)를 제출하면 자격제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 ② ‘학회 인정교육(40시간 이상)’ 이수자 : 교육이수 증명서 원본  
: 교육연수 수련 조건 ‘최근 3년 이내 총 24시간’과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자격규정 제4조에 따른 응시자격 증명 :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증명서 제출

<p>① 심리학 및 심리학 유관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2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학전공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 최종학위증명서</li> <li>▪ 심리학 유관전공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 최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이수과목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학사학위소지자는 학사과정에서 심리학과목을 12과목(3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석사학위소지자는 석사과정에서 심리학과목을 7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박사학위소지자는 박사과정에서 심리학과목을 7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유관전공으로 인정합니다. 성적증명서에 나타난 심리학 과목을 표시하여 제출하십시오.)</li> <li>▪ (공통) 코칭실무 경력 증명 : 기관장 직인이 찍힌 2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li> </ul>
<p>② 코칭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자격 검정규칙에서 규정한 코칭심리 필수 과목을 이수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칭실무 경력 증명 : 기관장 직인이 찍힌 3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li> </ul>
<p>③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코칭 분야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 사본</li> <li>▪ 코칭실무 경력 증명 : 기관장 직인이 찍힌 1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li> </ul>

(5)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수련내역 증명

<p>① 수련수첩</p> <p>: 수련수첩에는 다음의 수련내용을 기재하고 수퍼바이저가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칭 : 개인코칭 또는 그룹코칭 100회기 이상(10사례 이상)의 실시</li> <li>▪ 수퍼비전 : 10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은 기록</li> <li>▪ 사례연구모임 참가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례연구모임에 5회 이상 참가한 기록</li> <li>▪ 교육연수 : 서류심사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총 24시간 이상의 코칭심리 학술활동 (학술대회, 교육 등) 참가기록              ※ 수련기간이 3년이하일 경우에도 총 24시간 이상의 교육연수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li> </ul>
<p>②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한 2사례의 사례보고서(5회기 이상 및 1년 이내 사례)</p>

3. 문의

- 사무국 운영시간 : 오전10시 ~ 오후 17시 문의 가능
- E-mail : [support@coachingpsychology.or.kr](mailto:support@coachingpsychology.or.kr) / Tel. 070-5099-2477
- ※ 사무국에 상근인력이 없는 관계로 전화연결이 안될 경우 이메일 문의를 이용하면 가장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